

#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2차)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비규제지역)



##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약 해제 잔여세대로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 및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전화로 사전 방문 예약하셔야 하며, 당첨자에 한해 해당세대의 관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인테리어 옵션, 가전제품 옵션)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2.12.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12.(목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3-910004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18.(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0730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5번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남양뉴타운 B-11블록에 위치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아파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으로 최초 입주자 선정일('20.10.13)부터 3년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출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 계약 및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약 해제로 발생한 잔여 세대에 대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01월 17일(화요일)	01월 20일(금요일)	01월 27일(금요일)	01월 30일(월요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li> </ul>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스마트폰앱</li> </ul> </li> <li>[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li> <li>● 청약통장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스마트폰앱</li> </ul> </li> </ul>	당사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5 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ul>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해당주택건설지역(화성시)거주, 주택소유여부 판정은 계약체결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환불관련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약 10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5 번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남양뉴타운 B-11 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18층 8개 동 전용면적 85㎡ 이하 606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이후 입주지정기간 계약 해제 잔여물량 5 세대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2022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시기는 계약일로부터 2023. 3.30(목)까지 임

##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국민 주택	2023-910004	01	084.9709B	84B	3	1104	402, 702
						1105	602
		02	084.9339C	84C	2	1105	804
						1106	1804
	합 계				5	-	-

## ■ 공급가격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호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공급금액		비고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084.9709B	84B	1104	402	97,613,310	246,386,690	344,000,000	34,400,000	309,600,000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1104	702	97,613,310	259,386,690	357,000,000	35,700,000	321,300,000	
		1105	602	97,613,310	259,386,690	357,000,000	35,700,000	321,300,000	
084.9339C	84C	1105	804	97,570,730	254,429,270	352,000,000	35,200,000	316,800,000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인테리어 옵션, 가전제품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인테리어 옵션, 가전제품 옵션)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06	1804	97,570,730	259,429,270	357,000,000	35,700,000	321,300,000	

※ 상기 아파트 분양가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금액입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옵션현황,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인테리어 옵션, 가전제품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인테리어 옵션, 가전제품 옵션)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입주증인 단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II

## 세대별 설치된 추가선택품목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인테리어 옵션, 가전제품 옵션)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약식표기	동	호	설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84B	1104	402	발코니확장 (거실+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주방)	7,114,000	711,400	6,402,600	변경 및 취소 불가
			합계	7,114,000	711,400	6,402,600	
	1104	702	발코니확장 (거실+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주방)	7,114,000	711,400	6,402,600	
			LG하우시스)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유리)	1,600,000	160,000	1,440,000	
			합계	8,714,000	871,400	7,842,600	
			발코니확장 (거실+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주방)	7,114,000	711,400	6,402,600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50,000	625,000	5,625,000	
			롯데레디언스) 엔지니어드스톤 주방가구 상판+주방벽+아일랜드 상판+보조주방상판_마터호른	1,800,000	180,000	1,620,000	
			SK매직) 하이브리드 쿡탑_가스1구+인덕션2구 (GRA-BI320H)	850,000	85,000	765,000	
			LG하우시스)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유리)	1,600,000	160,000	1,440,000	
			SK매직) 스팀오븐(EONB401SA)	650,000	65,000	585,000	
			합계	18,264,000	1,826,400	16,437,600	
84C	1105	804	발코니확장(거실+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현관팬트리+주방)	10,874,000	1,087,400	9,786,600	변경 및 취소 불가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50,000	625,000	5,625,000	
			합계	17,124,000	1,712,400	15,411,600	
	1106	1804	발코니확장(거실+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현관팬트리+주방)	10,874,000	1,087,400	9,786,600	
			LG)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50,000	625,000	5,625,000	
			LG하우시스) 현관중문 3연동 금속 슬라이딩 (브론즈 투명유리)	1,600,000	160,000	1,440,000	
			합계	18,724,000	1,872,400	16,851,600	

※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옵션현황,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106동1804호 흥길동의 경우 → '11061804흥길동')
-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일 계약금 미입금 시 당첨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1.20 (금요일) ~ 2023.01.29 (일요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s://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1.20 (금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당첨자 제출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필요.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	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전체포함)	본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공통서류 및 해당 서류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에게 위임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3.01.30.(월요일) 10:00~15: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3.01.12.(목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계약체결 : 정당계약자의 계약체결 및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2개월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의 해제」 제4조의1 제2항 및 「위약금」 제5조의1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며,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09.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5 번지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 분양문의
  - [031-8043-0172](tel:031-8043-0172)